

# 급 여 규 정

제 정	1999. 1. 19	1차개정	1999. 4. 21
2차개정	1999. 12. 29	3차개정	2000. 3. 28
4차개정	2000. 6. 7	5차개정	2000. 11. 3
6차개정	2000. 12. 27	7차개정	2001. 1. 15
8차개정	2001. 2. 19	9차개정	2001. 6. 12
10차개정	2001. 8. 24	11차개정	2001. 11. 27
12차개정	2001. 12. 29	13차개정	2002. 2. 14
14차개정	2002. 5. 10	15차개정	2002. 5. 30
16차개정	2002. 7. 16	17차개정	2002. 12. 14
18차개정	2003. 11. 28	19차개정	2003. 12. 26
20차개정	2004. 5. 27	21차개정	2004. 11. 2
22차개정	2004. 12. 24	23차개정	2005. 2. 2
24차개정	2005. 9. 8	25차개정	2005. 12. 30
26차개정	2006. 2. 17	27차개정	2006. 12. 29
28차개정	2008. 1. 24	29차개정	2008. 4. 25
30차개정	2008. 6. 16	31차개정	2008. 12. 4
32차개정	2009. 2. 12	33차개정	2009. 4. 21
34차개정	2009. 12. 30	35차개정	2011. 6. 15
36차개정	2011. 8. 11	37차개정	2011. 12. 14
38차개정	2011. 12. 28	39차개정	2012. 10. 19
40차개정	2012. 12. 28	41차개정	2013. 3. 22
42차개정	2013. 5. 14	43차개정	2013. 9. 12
44차개정	2013. 12. 30	45차개정	2014. 9. 30
46차개정	2014. 12. 31	47차개정	2015. 2. 10
48차개정	2015. 12. 30	49차개정	2016. 1. 14
50차개정	2016. 4. 22	51차개정	2016. 10. 19
52차개정	2016. 11. 11	53차개정	2017. 6. 30
54차개정	2017. 12. 6	55차개정	2018. 5. 18
56차개정	2018. 12. 27	57차개정	2019. 7. 15
58차개정	2019. 9. 20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의 집행간부, 감사, 전문심의위원 및 직원의 급여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6>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6.16, 2009.4.21, 2019.9.20>

1. “연공제”라 함은 보수가 호봉, 직급 등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결정되는 임금형태를 말하며 “연봉제”는 개인의 직무와 근무평가 등을 기준으로 보수가 연단위로 결정되는 임금형태를 말한다.
2. “보수”라 함은 연공제의 경우 기준봉급 및 제수당을 말하며 연봉제의 경우에는 기본급, 직무급, 평가급 및 시간외근무수당을 말한다.

3. “제수당”이라 함은 국내직원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과 자격수당을 말하며 해외직원의 경우 조정수당을 말한다.
  4. “초임호봉”이라 함은 신규채용될 때에 최초로 적용하는 호봉을 말한다.
  5. “승호”라 함은 호봉이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
  6. “승급”이라 함은 상위 직급으로 임명되는 것을 말한다.
  7. “보수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해 또는 그 달의 보수를 그 해 또는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8. “해외직원”이라 함은 해외에서 근무하는 본국 직원을 말한다.
  9.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10. “국내 기준급여”라 함은 해외직원이 국내근무시 급여규정 및 급여 절차에 따라 받을 급여 중 시간외근무수당, 자격수당을 제외한 금액상당액을 말한다.
  11. “임금피크제”라 함은 일정 연령에 도달하는 직원의 임금을 조정하고 직무 등을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설 2015.12.30>
  12. “월 통상임금”이라 함은 연공제의 경우 기준봉급, 그 달의 정기상여금 및 자격수당의 합계액을 말하며 연봉제의 경우 기본급, 직무급 및 평가급 합계액의 12분의 1을 말한다. <신설 2019.9.20>
- 제3조(적용범위)** ① 제2장의 연공제 보수 및 상여금에 관한 규정은 3급 이하 종합직원(팀장이상 직위를 부여받은 3급 직원을 제외한다), 일반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6.16, 2019.7.22>
- ② 제3장의 연봉제 보수에 관한 규정은 집행간부, 감사, 전문심의위원, 2급 이상 종합직원, 3급으로서 팀장(팀장에 준하는 직무를 포함한다) 이상 직위를 부여받은 종합직원 및 전문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6.16, 2019.7.15>
- ③ 연공제 적용대상 직원이 연도 중 팀장이상 직위를 부여받거나 승급하여 연봉제 적용대상 직원이 되는 경우 직위부여 또는 승급한 당해연도 말까지는 제2장을 적용하고 직위부여 또는 승급한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제3장을 적용한다.
- ④ 연봉제 적용대상인 3급 종합직원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함으로써 연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말까지는 제3장을 적용하고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제2장을 적용한다. <개정 2006.12.29, 2019.7.15>

## 제2장 연공제 보수 및 상여금

### 제1절 보수의 계산방법 및 지급기준

**제4조(보수지급일)** ①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순차적으로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수지급일을 임시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직원이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 정한 비상시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보수지급일 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일수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6.16>

③ 제1항에 불구하고 해외로 전근발령을 받은 직원이 임지에 착임한 경우에는 기준봉급 6개월분 내에서 선급할 수 있다.

**제5조(보수계산기간)** 보수는 월급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일급으로 할 수 있다.

**제6조(보수계산)** ① 보수는 채용·승급·승호·직무변동·휴직·복직·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퇴직의 경우에는 그 달의 보수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8.6.16>

② 보수계산에 있어서 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7조(파견자의 보수)** ① 다른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는 본직에서 근무하는 것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 근무를 위하여 파견된 직원의 보수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감독원에 파견된 직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서 정한 보수범위 내에서 특별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6.16>

**제8조(휴직자의 보수)** ① 청원휴직자에 대한 보수지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가사 등 질병 이외의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청원휴직자에 대하여는 기준봉급의 100분의 25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2.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휴직자에 대하여는 기준봉급의 100분의 25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12.28>

3.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 근무를 위하여 휴직한 자에 대하여 보수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국내외 사비유학 또는 사법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육아휴직자에 대하여는 자녀 1명당 최초 1년 이내의 휴직기간 중 기준봉급의 100분의 25을 지급한다. <개정 2011.6.15, 2016.1.14>

③ 인병휴직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한다. 다만 2년을 초과하는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을 지급한다.

④ 삭제 <2008.1.24>

⑤ 명령휴직자에 대하여는 기준봉급의 100분의 40 범위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명령휴직된 후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원래의 정기승호일을 기준으로 한 보수액과 휴직기간 중의 보수지급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⑥ 병역복무를 위한 입영휴직자(6급에 한함)에 대하여는 군복무기간 중 기준봉급의 100분의 40 범위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9.1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보수)**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승인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에 대한 약정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2.12.28]

**제9조(휴가자의 보수)** ① 인사관리규정상의 각종 휴가(보건의휴가 제외)는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자 및 고용보험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동 급여를 차감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2.4, 2012.12.28>

② 보건의휴가는 사용 1일당 기준봉급의 60분의 1 상당액을 급여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2.12.28>

**제10조(해외직원의 보수)** ① 해외직원의 보수는 가처분소득액을 기준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해외직원은 국내 제세공과금 등의 납부를 위하여 기준봉급 및 상여금의 100분의 40이내에서 현지 통화금액을 국내에서 원화로 수령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1>

③ 제2항의 국내수령액에 대한 지급환율은 매 보수지급 전 영업일의 각 통화에 대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제11조(잔무처리기간 중의 보수)** 휴직, 정직 또는 면직된 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로 인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 계속 직무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겸직시의 보수)** 본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때에는 겸직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승호의 제한)** ① 휴직기간은 승호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입영으로 인한 휴직
2. 가족돌봄휴직 <신설 2012.12.28>
3. 육아휴직(자녀 1명당 최초 1년 이내에 한한다.) <개정 2016.1.14>
4.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명령휴직된 후 무죄가 확정된 경우의 명령휴직
6.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 근무를 위한 청원휴직

②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호를 제한한다. <개정 2008.12.4>

③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각 기준봉급표의 최고호봉에 도달할 때에는 초과하는 근무기간에 불구하고 승호를 정지한다. <개정 2008.6.16>

**제14조(승호의 조정)** ① 인사관리규정에 의한 국내외 사비유학 휴직자 또는 사법연수 휴직자가 복직을 할 때에는 수학기간 또는 연수기간 상당의 호봉을 가산할 수 있으며, 인사관리규정 제66조의1에 의한 재고용조건부 퇴직자가 재고용될 경우 상호채용기간 상당의 호봉을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조정에 적당하지 아니한 단수는 통산하여 소요승호기간이 경과한 때 승호를 실시한다. <개정 2008.12.4>

② 제1항의 국내외 사비유학 휴직자 또는 사법연수 휴직자의 호봉가산 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근무기간의 계산)** ① 근무기간은 현 호봉이 결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② 인사관리규정에 의한 결근일수는 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결근일수가 월평균 1일 미만일 경우에는 이를 근무기간으로 본다. <개정 2008.12.4>

**제16조(징계처분자의 보수)**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수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12.4>

**제17조(대기발령자의 보수)** ①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대기발령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대기발령기간 중 보수 및 상여금의 100분의 30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4>

②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로서 대기발령을 받은 자가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된 경우 또는 법원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액과 보수 및 상여금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12.28>

**제17조의2(자문역의 보수) 삭제** <2017.6.30>

**제17조의3(업무추진역의 보수)** 업무추진역으로 인사발령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역 발령기간 중 보수 및 상여금의 100분의 20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2절 기준봉급

**제18조(기준봉급)** ① 종합직원의 기준봉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12.28, 2019.7.15>

② 일반직원(행정)의 기준봉급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12.28, 2019.7.15>

③ 일반직원(관리)의 기준봉급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12.28, 2019.7.15>

④ 해외직원의 기준봉급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12.28, 2015.12.30, 2016.1.14>

⑤ 제4항의 기준봉급에는 해외직원이 취업규칙상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행하는 연장근무와 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지급하도록 정한 보수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4.21>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기준봉급에는 월10만원의 중식비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19조(승호)** ① 기준봉급은 소요 승호기간의 경과에 따라 승호되며 1개 호봉간의 승호에 필요한 최저근무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승호는 매월 초일자로 실시한다.

**제20조(신규채용자의 초임호봉)** ① 신규채용자에 대하여 최초로 적용하는 초임호봉은 별표 5와 같다.

② 석사학위 취득자를 채용할 때에는 3호봉 범위내에서 인적자원개발실장이 정하는 별도의 호봉을 초임호봉에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14.9.30, 2018.5.18>

③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자를 일반직원(행정)으로 채용할 때에는 대학수학

기간 범위내에서 인적자원개발실장이 정하는 별도의 호봉을 초임호봉에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18.5.18, 2019.7.15>

④ 경력소지자를 채용할 때에는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경력가산 환산을 범위내에서 평가한 경력호봉을 초임호봉에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08.12.4>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호봉가산에 있어서는 환산된 기간 1년에 대하여 1호봉을 가산하며 1년 미만 단수는 차기 승호를 위한 근무기간에 산입한다.

⑥ 감독원 업무에 필요한 특수경력이나 자격 또는 학력을 인정하여 채용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장이 따로 초임호봉을 정할 수 있다.

**제21조(재 채용자의 초임호봉)** 감독원에서 퇴직한 자를 재채용할 때에는 퇴직 당시의 호봉에 그 호봉이 결정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무기간 및 퇴직후 경력을 감안하여 초임호봉을 정한다.

**제22조(일반직원(행정)의 종합직원 전환자에 대한 초임호봉)** 일반직원(행정)에서 종합직원으로 전환된 자의 초임호봉은 전환 전 수령하던 급여에 상당하는 종합직원 5급의 호봉으로 한다. <개정 2019.7.15>

### 제3절 제수당

**제23조(시간외근무수당)** ① 감독원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행하는 시간외근무에 대하여는 그 근무 매시간에 대하여 월 통상임금의 209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4.21, 2019.9.20>

② 제1항의 시간외근무가 야간근무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무와 중복될 경우에는 그 근무 매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일정률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18>

③ 인사관리규정 제15조의2에 의한 선택적보상휴가 중 미사용일수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21, 2015.2.10>

**제24조(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업무)** 시간외근무수당은 총무국장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부서장(부서내 실장 포함)이 시간외근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지급한다. 다만, 야간근무, 토요일근무 및 휴일근무는 담당 부원장보(선임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1.6.15, 2013.5.14>

**제25조(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기 등)** ①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다음달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인사관리규정 제15조의2에 의한 선택적보상휴가를 부여받고자 하는 시간외근무 중 선택적보상휴가를 부여받지 못한 시간외근무(일수 미만 단수)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기간은 연간으로 하며, 12월말에 지급한다. <개정 2015.2.10>

② 제23조에 의한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시 월 통상임금은 그 수당 지급 대상기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5.2.10, 2019.9.20>

③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무국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직위·직급수당) 삭제** <2003.12.26>

**제27조(업무수당) 삭제** <2003.12.26>

**제28조(가족수당) 삭제** <2003.12.26>

**제29조(자격수당)** ①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9의 자격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자격을 가진 직원에 대하여는 그 중 유리한 자격에 의한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직원이 다른 기관에 파견발령을 받아 자격증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총무국장이 결정하여 별표 9의 자격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조정수당) 삭제** <2012.12.28>

## 제4절 상여금

**제31조(상여금의 지급대상 등)** ① 상여금은 정기상여금 및 평가상여금을 말한다. <신설 2012.12.28>

② 정기상여금은 지급대상기간 중 재직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명령휴직된 후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12.28, 2014.12.31>

③ 평가상여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평가대상연도 중 재직한 자(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자는 제외)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12.28>

**제32조(정기상여금의 지급)** ① 정기상여금은 지급기준일 현재의 기준봉급에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12.28, 2014.12.31>

② 제31조 제2항의 정기상여금의 지급률은 100분의 600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상여금은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의 1일을 지급기준일로 하여 그 날에 각각 100%씩 지급하며, 지급일이 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순차적으로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④ 삭제 <2012.12.28>

⑤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승인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에 대한 약정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2.12.28>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 퇴직, 휴직, 복직, 국내에서 해외(또는 해외에서 국내)로 이동, 연봉제에서 연공제 전환, 징계의 경우에는 그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퇴직의 경우에는 그 달의 정기상여금 전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4.12.31>

**제32조의2(평가상여금의 지급)** ① 평가상여금은 평가대상연도의 기준봉급에 평가대상연도에 대한 기관평가결과와 연계된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내부성과차등을 반영한다.

② 평가상여금은 설날, 7월의 말일, 추석 직전의 일자 중 지급기준일을 정하여 순차적으로 30%, 40%, 30%를 지급하고, 연말에는 연간 지급할 금액과 연중 기 지급액과의 차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5.2.10>

③ 원장은 평가상여금의 지급에 필요한 기타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28]

**제32조의3(해외직원의 상여금)** 해외직원의 경우 제32조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를 따른다.

1. 상여금은 기준봉급에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

2. 제32조 제2항의 정기상여금의 지급률은 100분의 60으로 하고, 동조 제3항의 지급기준일에 각각 100%씩 지급한다. <개정 2012.12.28>

**제33조(상여금 지급의 제한)**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 지급을 제한한다. <개정 2008.12.4>

## 제3장 연봉제 보수

### 제1절 보수의 계산방법 및 지급기준

**제34조(보수지급일)** 기본급 및 직무급은 매월 20일에 지급하며 평가급은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의 1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기본급 및 직무급은 순차적으로 그 전일에 지급하며 평가급은 순차적으로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제35조(보수계산 및 지급방법)** ① 기본급 및 직무급은 연급으로 책정하며 12회 균등분할하여 월급으로 지급한다.

② 평가급은 연급으로 책정하며 연간 지급회수로 균등 분할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6조(보수지급기준)** 기본급, 직무급 및 평가급은 채용·직무이동·휴직(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명령휴직된 후 무죄가 확정된 휴직자 제외)·복직·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퇴직의 경우에는 그 달의 보수전액을 지급한다.

**제37조(파견, 휴가자의 보수)** ① 파견자, 휴가자의 보수는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의 기준봉급은 월 기본급과 월 직무급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7조의2(휴직자의 보수)** ① 청원휴직자에 대한 보수지급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가사 등 질병 이외의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청원휴직자에 대하여는 기본급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2.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휴직자에 대하여는 기본급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12.28>
3.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 근무를 위하여 휴직한 자에 대하여 보수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국내외 사비유학 또는 사법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육아휴직자에 대하여는 자녀 1명당 최초 1년 이내의 휴직기간 중 기본급의 100분의 30을 지급한다. <개정 2011.6.15, 2016.1.14>
- ③ 인병휴직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한다. 다만 2년을 초과하는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을 지급한다.
- ④ 삭제 <2008.1.24>
- ⑤ 명령휴직자에 대하여는 기본급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명령휴직된 후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원래의 정기승호일을 기준으로 한 보수액과 휴직기간 중의 보수지급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7조의3(대기발령자 등의 보수)** ①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대기발령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대기발령기간 중 보수의 100분의 30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4>

② 휴직자 등 직무에 보임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직무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6.30>

③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로서 대기발령을 받은 자가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된 경우 또는 법원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지급액과 보수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④ 업무추진역으로 인사발령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역 발령기간 중 보수의 100분의 20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7조의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보수)**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승인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에 대한 약정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2.12.28]

**제38조(기타 사항)** 이 장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보수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제2장의 연공제 보수 및 상여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준봉급은 기본급으로 본다.

## 제2절 종합직원 등의 연봉

**제39조(연봉의 구성)** 종합직원 및 전문직원(이하 “종합직원 등”이라 한다)의 연봉은 기본급, 직무급, 평가급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7.15>

**제40조(기본급)** ① 종합직원 등의 기본급은 전년도 기본급에 별표 11에 의한 기본급 차등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물가상승률 및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2급직원이 1급으로 승급한 때에는 2,284천원을, 3급직원이 2급으로 승급한 때에는 1,828천원을, 4급직원이 3급으로 승급한 때에는 1,487천원을, 5급직원이 4급으로 승급한 때에는 1,145천원을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2.12.28, 2013.9.12, 2014.9.30, 2015.12.30, 2016.10.19, 2017.12.6, 2018.12.27, 2019.7.15>

② 팀장(J)이상 직위를 부여받거나 승급하여 새로이 연봉제 보수를 적용받게 되는 직원의 기본급은 다음 각호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개정 2009.12.30>

1. 연봉제 보수 적용 직전년도에 수령한 총급여에서 팀장(J) 직무급의 90%를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180분의 100을 곱한 금액. 단, 총급여는 보수 규정에 의한 기본봉급, 자격수당 및 상여금(평가상여금 제외)의 연간 합산 금액으로 하되, 팀장(J)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제1호의 금액을 기본급으로 보아 별표 11에서 정한 기본급 차등액

③ 신규채용자의 초임기본급은 해당직원의 경력, 능력, 담당업무 등을 기준으로 인적자원개발실장과 채용 직원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다음연도 기본급은 전년도 기본급에 별표 11에 의한 기본급 차등액(채용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개정 2009.12.30, 2018.5.18>

④ 기본급 차등액 산정을 위한 각 평가등급에의 인원배정은 제42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9.12.30>

⑤ 종합직원 등의 초임기본급과 상한급은 별표 10과 같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정한 기본급이 초임하한급을 하회하거나 상한급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초임하한급과 상한급을 기본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4, 2019.7.15>

⑥ 종합직원 등의 기본급에는 월10만원의 중식비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7.15>

**제41조(직무급)** ① 종합직원 등의 직무급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9.7.15>

② 제1항의 직무급을 결정함에 있어 직위를 부여받지 아니한 직원의 경우로서 부서장, 실장, 팀장(S) 또는 팀장(J)에 상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해당직위에 상당하는 직무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평가급)** ① 종합직원 등의 평가급은 기본급에 0.8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평가급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9.7.15>

② 평가급률은 전년도 근무평가결과 근무성적평정 점수가 높은 순서로부터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으로 분류하여 해당 등급에 따라 별표 13과 같이 적용한다.

③ 각 근무평가등급에의 인원배정은 같은 직위에서의 전체 평정대상 직원을 기준으로 S등급은 10%, A등급은 15%, B등급은 50%, C등급은 15%, D등급은 10% 해당인원으로 하되, 각 근무평가등급에서의 소수점 이하 인원은 절사하여 동 인원을 B등급에 배정한다. <개정 2009.12.30>

④ 휴직, 파견, 대기발령, 채용시기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에서 제외된 직원에 대하여는 조직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적정 근무평가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제42조의2(평가상여금)** 원장은 평가대상연도 중 재직한 자(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자는 제외)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평가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2.12.28>

**제42조의3(해외직원 연봉)** 연봉제 보수를 적용받는 해외직원의 경우 연봉은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외근무기간 동안은 제2장의 연공제 보수 및 상여금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8.6.16>

**제43조(시간외근무수당)** ①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는 그 근무 매시간에 대하여 월 통상임금의 209분의 1.5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 시간외 근무가 야간근무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무와 중복될 경우에는 그 근무 매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일정률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4.21, 2018.5.18, 2019.9.20>

②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팀장(팀장에 준하는 직무를 포함한다) 이상 직위를 부여받지 아니한 직원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6.15, 2013.5.14, 2016.11.11>

③ 인사관리규정 제15조의2에 의한 선택적보상휴가 중 미사용일수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21, 2015.2.10>

### 제3절 집행간부 등의 연봉

**제44조(연봉구성)** ① 집행간부·전문심의위원 및 감사(이하 “집행간부 등”이라 한다)의 연봉은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한다. <개정 2009.4.21>

② 기본급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며, 급여지급일에 균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퇴직의 경우에는 그 달의 기본급을 전액 지급한다. <신설 2009.4.21, 개정 2011.8.11>

③ 성과급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며, 성과급률 확정 이후 2개월 이내 일시 지급한다. 다만, 퇴직의 경우에는 그 달의 성과급을 전액 지급한다. <신설 2011.8.11>

**제45조(기본급)** ① 원장의 기본급은 206,848천원, 수석부원장의 기본급은 182,799천원, 감사의 기본급은 165,479천원, 부원장의 기본급은 165,479천원, 부원장보의 기본급은 148,934천원, 전문심의위원의 기본급은 148,934천원으로

한다. <개정 2012.10.19, 2013.3.22, 2013.12.30, 2014.12.31, 2015.2.10, 2016.4.22, 2017.12.6, 2018.5.18>

② 집행간부 등이 직무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 직무미부여 기간 중 기본급의 100분의 3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무를 부여받지 못한 자가 법원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감액지급한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1.24, 2017.12.6>

③ 제1항의 기본급에는 월10만원의 중식비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④ 감독원에 파견된 집행간부 등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서 정한 보수범위내에서 특별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6.16>

**제46조(성과급)** ① 성과급은 평가대상연도 기본급에 성과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8.11>

② 제1항의 성과급률은 기관 성과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8.11>

③ 삭제 <2011.8.11>

④ 삭제 <2011.8.11>

[본조신설 2009.4.21]

**제46조의2(특별상여금)** 삭제 <2009.4.21>

#### 제4절 연봉의 조정

**제47조(적용단위기간)** 연봉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봉의 적용기간 중 직무이동, 휴직, 복직, 감봉 등 연봉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을 조정할 수 있다.

**제48조(연봉결정 및 통지)** ① 총무국장은 매년 12월중 담당 부원장의 승인을 얻어 직원의 연봉을 결정하고 그 내역을 개별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총무국장은 노동조합원인 직원이 동의하는 경우 해당 직원의 연봉결정 내역을 노동조합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조합은 통보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연봉결정시 3급팀장과 동일 경력의 3급 미보임자간 보수격차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원장은 3급팀장의 기본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삭제 <2008.6.16>

**제49조(비밀유지)** 직원은 자신의 보수를 타 직원에게 알려주거나 타 직원의 보수를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0조(연봉심의조정위원회)** ① 연봉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직원의 연봉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연봉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급여담당 부원장, 총무국장, 이의 신청 직원 소속부서장, 인사기획 팀장, 급여복지팀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이의신청 직원이 노동조합원인 경우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직원 1인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08.6.16, 2018.5.1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원장이 되며 급여복지팀장이 간사가 된다. 위원장의 부재시에는 총무국장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8.6.16>

④ 위원장은 이의 신청 직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장 연차휴가보상금

**제51조(연차휴가보상금의 지급대상)** ① 인사관리규정상 정해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하여는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인사관리규정 제9조의2에 의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사용휴가에 대해 보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4>

② 퇴직하는 직원에 대하여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한다.

**제52조(연차휴가보상금 지급)** ① 연차휴가보상금은 매일수에 대하여 8시간, 매시간에 대하여 월 통상임금의 209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9.12.30, 2019.9.20>

② 연차휴가보상금 산정시 월 통상임금은 연차휴가보상금 지급대상기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해외직원의 경우 국내 월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9.20>

③ 연차휴가보상금의 지급대상, 기간, 구분 및 지급시기등 구체적인 사항은 총무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장 퇴 직 금 여 <개정 2009.12.30>

**제53조(지급사유)** ① 퇴직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한다.

1. 의원면직
2. 정년퇴직
3. 당연퇴직
4. 징계면직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직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기간 중의 퇴직금을 정산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4.21>

③ 집행간부 등을 제외한 직원으로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에 의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및 인사관리규정 제66조의1에 의해 퇴직한 후 감독원에 재고용된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4.25, 2008.12.4>

④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직원은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신설 2009.12.30>

**제54조(지급액)** ① 직원의 퇴직금은 퇴직 당시의 기준급여에 근속기간에 따른 기준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지급액은 국민연금 관계법령에 따라 그간 감독원이 지급한 국민연금 각출료 중 퇴직금 전환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근속기간의 단수가 1년 미만인 월의 경우에는 퇴직 당해년에 가산되는 기준지급률에 해당 월수를 곱한 비율의 12분의 1을 적용한다. <개정 2009.4.21>

② 제1항의 기준급여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연차휴가보상금은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연차휴가보상금 총액의 3/12 해당액을 퇴직일전 3개월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반영한다.

③ 해외근무 중 퇴직하는 본국직원의 퇴직금은 국내 기준급여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④ 제1항의 기준지급률은 근속기간 1년마다 30일분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⑤ 삭제 <2009.4.21>

**제54조의2(지급액)** 삭제 <2017.12.6>

**제55조(근속기간)** ① 근속기간은 휴직기간 및 정직기간을 포함한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비유학, 사법연수, 국제기구파견 및 배우자 동반 휴직기간과 자녀 1명당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기간은 복직 후 근무한 기간 만큼을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08.6.16, 2016.1.14>

② 제1항의 근속기간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월할 계산하며 소숫점 이하는 1월로 본다. 다만, 재직 중 사망 및 감독원 형편에 의하여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1년으로 한다.

③ 제53조 제2항에 의하여 퇴직금을 정산지급한 경우의 근속기간은 최종 정산일의 다음날부터 새로 기산한다.

**제56조(퇴직금지급의 특례)** 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한 자와 순직으로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한 자 : 기준급여에 기준지급률의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2. 순직한 자 : 기준급여에 기준지급률의 100분의 100을 곱한 금액

② 비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한 자와 순직 이외의 사망으로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근속기간 10년 이상인 자로서 비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하는 자 : 기준급여의 5개월분

2. 순직 이외의 사망으로 퇴직하는 자 : 근속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기준급여의 5개월분, 근속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기준급여의 10개월분, 근속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기준급여의 15개월분

③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직원에 대하여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제55조 제3항에 불구하고 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을 계산하여 기준지급률을 정한다.

④ 인사관리규정 제66조의1에 의해 퇴직한 자가 감독원에 재고용된 경우 상호채용기간은 우리원에 근무한 것으로 보아 제2항의 근속기간 산정시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08.12.4>

⑤ 제1항 제2호의 퇴직금이 제2항 제2호의 퇴직금보다 적을 경우 제2항 제2호를 적용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의한 퇴직금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57조(형벌 등에 의한 퇴직금의 감액)** 삭제 <2000.11.3>

**제58조(사망자의 퇴직금 수령)**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 내지 제50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08.6.16>

**제59조(명예퇴직자의 특별퇴직금)** ① 만 20년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  
까지의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직원이 정년퇴직일에 달하기 이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기준퇴직금 이외에 별도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55조 제3항에 불구하고 동 조의 근속기간 산정시  
에는 입사일로부터 계산하며, 인사관리규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경력  
가산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08.12.4, 2015.12.30>

② 인사관리규정 제66조의1에 의해 퇴직한 자가 감독원에 재고용된 이후  
퇴직하거나 상호채용기간 내에 퇴직하는 경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상호  
채용기간은 우리원에 근무한 것으로 보아 근속기간 산정시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08.12.4>

③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특별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

1. 금융위원회 위원, 증권선물위원회 위원 또는 감독원의 집행간부 등으로  
임명되어 퇴직하는 자 <개정 2008.4.25>
2. 징계와 관련하여 퇴직하는 자와 비위사실에 관련되어 퇴직하는 자
3. 사망 또는 휴직기간 만료로 인하여 퇴직하는 자
4. 기타 특별퇴직금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 제1항의 특별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기준봉급 또는  
기본급에 다음 각호에서 정한 지급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그 지급  
대상은 총무국장과 인적자원개발실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동 기준  
봉급 또는 기본급이 퇴직일 이전 12개월간의 근로소득세 과세대상 월평균  
임금의 4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월평균임금의 45% 해당금액에 지급  
월수를 곱한 금액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18>

1. 정년 잔여기간 5년 이하 : 잔여월수 × 1/2
2. 정년 잔여기간 5년 초과 : 30개월 + 5년 초과 잔여월수 × 1/4 (최장 45개월)

**제60조(퇴직금 최저지급액)** 이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액이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제8조상의 최저지급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동 최저지급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8.6.16>

## 제6장 보칙

제61조 <삭 제>

제62조(세부시행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무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6.16>

제63조(임금피크제) ①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 <신설 2015.12.30>

② 임금피크제의 시행에 따른 급여 및 퇴직금 지급 기타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무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5.12.30>

## 부칙 <1999.1.19>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세칙 시행일 이전에 은행감독원의 급여후생세칙, 증권감독원의 보수규정 및 퇴직금규정, 보험감독원의 보수규정 및 퇴직금규정, 신용관리기금의 보수규정 및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으로서 이 세칙에 규정된 사항은 이 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은행감독원 등 직원의 호봉)** ①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관계 등이 승계되는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이하 “은행감독원 등”이라 한다)의 일반직원 호봉은 각 직원의 경력, 근속연수 및 호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은행감독원의 일반직렬사원, 증권감독원의 초급사무원, 보험감독원 및 신용관리기금의 6급 직원으로서 사무직원으로 전환되는 직원의 호봉은 전환 전 수령하던 급여에 상당하는 사무직원의 호봉으로 한다.

**제4조(은행감독원 등 직원의 1999년도 기본급)** ① 은행감독원 등 직원의 1999년도 기본급은 다음 각호를 합산한 금액의 50% 해당금액으로 한다.

1. 각 직원이 1998년 중 수령한 총급여. 다만, 1998년 중 승진(승급)한 직원의 직위(직급)수당은 승진(승급)후 직위(직급)수당의 연간금액으로 한다.

2. 각 직원에 대하여 1998.12.31 당시 소속기관의 보수 및 복지관련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1호봉 승호로 인한 연간 총급여 상승금액

3. 1998.12.31 당시 소속기관에서 자격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이 세칙(별표 9)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 직원에 대하여 이 세칙(별표 9)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연간 자격수당 수령금액

② 제1항의 총급여는 은행감독원 등의 보수 및 복지 관련규정에 의한 기준봉급, 제수당(시간외근무수당 제외), 상여금, 체력단련비, 경로효친비, 중식대 및 통근보조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세칙 시행일 현재 파견자 등의 직무급)** 이 세칙 시행일 현재 파견 또는 휴가 중인 자로서 별도 직무에 보임되지 아니한 직원의 직무급은 1998년 중 수령한 총급여의 10% 해당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검사·제재직군 기타직위의 직무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직무급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6조(1999년도 평가급)** ① 일반직원 등의 1999년도 평가급은 제42조 제1항에 불구하고 1월에서 11월까지는 (기본급×0.8×11/12), 12월에는 (기본급×0.8×1/12)+(기본급×0.8×1/12+직무급×1/12)×평가급률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② 집행간부 등의 1999년도 평가급은 제46조 제1항에 불구하고 1월에서 11월까지는 (평가기준급×11/12), 12월에는 (평가기준급×1/12)×(1+평가급률)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제7조(퇴직금의 경과조치)** ① 1998. 12. 31 이전 입사자에 대하여는 제54조의 규정을 노사협약 종료후 적용한다.

② 노사협약에 의하여 1998. 12. 31 이전 입사자에게 제5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퇴직직원의 퇴직금은 1998. 12. 31 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1998. 12. 31 당시 소속기관의 퇴직금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 금액과 1999. 1. 1 이후 근속기간에 대한 이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③ 노사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1998. 12. 31 이전 입사자에게 제5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퇴직직원의 퇴직금은 1998. 12. 31 당시 소속기관의 퇴직금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금은 퇴직직원이 1999. 1. 1 이후에도 1998. 12. 31 당시 소속기관에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급여 및 기준지급률을 정하여 산정한다.

#### 부칙 <1999.4.21>

이 세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1999.12.29>

이 세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36조, 제40조, 제42조, 부칙(99.1.19)제4조, 제6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1)의 기준봉급표, (별표 6)의 직위수당 및 직급수당표, (별표 7)의 업무수당표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2조의2, 제46조의2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00.3.28>

이 세칙은 2000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00.6.7>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0년 평가급 산정시 평가급률은 이 세칙 제42조 제2항 및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급률을 적용하고, 근무평가등급은 종전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평가등급과 이 세칙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평가등급 중 상위 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부칙 <2000.11.3>

이 세칙은 2000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7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하며 부칙(1999.1.19 제정) 제7조는 2000년 10월 30일부터 삭제하고 (별표12)의 직무급표 주1)의 개정규정은 2000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00.12.27>

이 세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조, 제22조, (별표1)의 일반직원 기준봉급표, (별표2)의 사무직원 기준봉급표, (별표4)의 해외직원 기준봉급표, (별표6)의 직위수당 및 직급수당표, (별표7)의 업무수당표, (별표10)의 초임기본급 및 상한급표 및 (별표11)의 기본급 범위 및 승급액표 중 직급조정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5>**

이 세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 및 제52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2.19>**

이 세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6.12>**

이 세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9)의 자격수당표 및 (별표12)의 직무급표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8.24>**

이 세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27>**

이 세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2항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29>**

이 세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2.14>**

이 세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5.10>**

이 세칙은 2002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7.16>**

이 세칙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13>**

이 세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1.28>**

이 세칙은 2003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26>**

이 세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3년도에는 별표 6의 개정 직위·직급수당표 중 아래 표1의 해당급과 별표 12의 개정 직무급표 중 아래 표2의 해당금액에 대하여는 2003.9월말 현재의 직위·직급을 기준으로 한 근무평가등급에 따라 별표 13의 2000년 평가급률표(연공제 직원은 기타의 평가급률)를 적용하여 차등지급한다.

<표1>

직위·직급수당표

(단위 : 매월, 원)

대표직위 \ 직급	1~2급	3급	4급	5급
부서장	190,000	180,000	100,000	100,000
실 장	150,000	140,000		
팀 장	110,000	100,000		
기 타	70,000	70,000	50,000	40,000



<표2>

직 무 급 표

(단위 : 연간, 원)

	부서장	실장	팀장	기타
인허가·정책직군	4,656,000	3,327,000	2,154,000	1,408,000
검사·제재직군	4,489,000	3,269,000	2,105,000	1,373,000
소비자보호직군	4,426,000	3,211,000	2,056,000	1,339,000
관리직군	4,426,000	3,211,000	2,056,000	1,339,000
감독지원직군	4,593,000	3,269,000	2,105,000	1,408,000

**부칙 <2003.12.26>**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시의 기본급 가산액을 적용함에 있어 2003년 12월말 현재 제3장(연봉제 보수)의 적용을 받고 있는 1급 및 2급인 직원에 대하여는 783천원을 가산하며, 2004년 1월 1일자로 새로이 연봉제를 적용받는 직원에 대하여 동조 제2항의 기본급 산정시 “직전년도에 수령한 총급여”는 이 세칙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급여를 연간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2004.5.27>**

이 세칙은 200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1.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4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간외근무에 대한 특례)** ① 2007.6.30까지 주12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은 제23조제1항 및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공제는 기준봉급의 183분의 1.25, 연봉제는 기본급의 2.196분의 1.25로 한다.

② 2005.6.30까지의 토요일 근무는 제24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서장(부서내 실장 포함)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③ 이 세칙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월차휴가(종전 인사관리규정 제9조제7항에 의한 토요일 근무 관련 월차휴가를 말한다)를 2004년말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여세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휴가보상금에 준하여 보상한다.

#### 부칙 <2004.12.24>

이 세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04.12.2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차휴가보상에 대한 경과규정) 2004.12.31 현재의 직원에 대하여는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시행에 따라 축소되는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2005.1.1을 기준으로 개인별 보전일수를 확정하여 동 일수에 대하여만 매년 제52조의 연차휴가보상금 지급기준(연봉제 직원은 기본급)을 준용하여 연차휴가보상금 지급시 지급한다. 이 경우 보전일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감소한 연차휴가일수를 말한다.

#### 부칙 <2005.3.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5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05. 9. 8>

이 세칙은 2005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05.12.30>

이 세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2.17>**

이 세칙은 2006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9>**

이 세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4>**

이 세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제32조제1항, 제37조의2제2항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4.25>**

이 세칙은 200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취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및 제23조 중 “급여세칙”을 각각 “급여규정”으로 한다.

② 「조직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직무권한분류표 1. 13. 라. (3) 중 “급여세칙”을 “급여규정”으로 한다.

③ 「인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8항, 제9조의2 제1항, 제15조의2제1항·제2항, 제77조 및 제100조 중 “급여세칙”을 각각 “급여규정”으로 한다.

**부칙 <2008.12.4>**

이 규정은 2008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09.2.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예퇴직자의 특별퇴직금에 대한 특례) 제5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12.31.까지 원장이 특별히 공고하는 절차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에는 기준퇴직금 이외에 다음의 각호에서 정한 특별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9조에 따른 명예퇴직자의 특별퇴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특별퇴직금은 제54조의 기준급여에 다음에서 정한 지급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지급월수 :  $【9+(잔여월수-12) \times (2/3)】$  (최장 30개월)

2. 전직지원금으로 2천만원을 지급한다.

3. 대학생자녀학자금으로 최대 1천만원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총무국장이 결정한다.

### 부칙 <2009. 4. 21>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2항, 제30조 단서,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3조 제1항 및 제3항, 제43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9의 보험계리인, 손해사정인 및 정보처리기사(1급)에 대한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09.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연봉제 직원의 연봉산정에 대해서는 2010년분부터 적용하며 별표 9는 2009년 11월 9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종전 부칙에 대한 특례) 2004. 12. 24. 부칙 제2조는 2010년부터 급여 삭감시 이를 감안한다.

**부칙 <2011. 6.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제43조 제2항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11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8.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행간부 등의 성과급에 대한 경과규정) 2011.7.1 현재 재직 중인 집행간부 등에 대해서는 퇴직(연임 또는 승진 포함)할 때까지 다음 각호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한다.

1. 제44조는 종전(2011.6.15 개정) 급여 규정을 적용한다.
2. 제46조 제1항과 제2항은 개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목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한다.
  - 가. 2011.1.1 이전 임명된 집행간부 등의 당해연도 성과급은 직전년도 기본급에 직전년도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확정되는 성과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매월 지급하되, 동 성과급률 확정 이전까지는 종전 성과급률을 준용하고, 당해연도 성과급률 확정시 정산한다.
  - 나. 2011.1.1 이후 임명된 집행간부 등의 성과급은 평가대상연도 기본급에 성과급률 80%를 곱한 금액으로 매월 우선 지급하고, 성과급률 확정시 정산한다.

**부칙 <2011. 12.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주4), 별표 1-1, 별표 2의 주2), 별표 2-1, 별표 3의 주2) 및 별표 3-1은 2012년 1월 1일부터 삭제한다.

**부칙 <2011. 12. 28>**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0.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직원 기준봉급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4(해외직원 기준봉급표)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의 제8조의2, 제37조의4, 제8조제1항제2호, 제13조 제1항제2호 및 제37조의2제1항제2호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조정수당에 관한 적용례)** 종전 규정 제30조에 따른 조정수당은 2012년도분까지는 해당금액의 50%를 지원한다.

**제4조(자격수당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자격수당표)는 '12.5.16.부터 시행한다. 다만, 자본시장조사1·2국, 회계감독1·2국, 금융서비스개선국, 기업금융개선국, 거시감독국, 분쟁조정국 및 제재심의실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3.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9(자격수당표)의 보험계리사 자격수당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5.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9.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9.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제1항 및 별표 10의 1급 기본급, 별표 4의 1급 기준봉급에 대한 개정규정과 별표 12의 선임국장 및 부서장 직무급에 대한 개정규정, 별표 12의 부서장 및 실장 직무급 지급대상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2. 10>**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제25조,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9(자격수당표) 및 별표12(직무급표) 주1,주2)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0일부터 시행하며 제18조(기준봉급) 및 별표4-1(해외직원 기준봉급표1)의 개정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동 일자 이후 해외사무소 신규 발령 직원에 대해 적용하며 제2조(정의), 제59조(명예퇴직자의 특별퇴직금), 제63조(임금피크제)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 1.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 4.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9(자격수당표)의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 10.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 11.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시간외근무수당)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 12.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규정 별표9(자격수당표) 및 별표12(직무급표) 주1), 주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제54조의2(지급액)는 2017년 12월 6일부터 삭제하며, 제45조(기본급)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45조②는 2017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5.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규정 제20조, 제40조, 제50조, 제59조는 2018년 1월 25일부터 시행하고, 별표9(자격수당표)는 2018년 2월 12일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 제23조 및 제43조는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12. 27>**

이 규정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 7. 15>

이 규정은 2019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 9. 20>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별표 목차 >

1. 종합직원 기준봉급표
  - 1-1. 종합직원 기준봉급표1 삭제 <2012.1.1>
2. 일반직원(행정) 기준봉급표
  - 2-1. 일반직원(행정) 기준봉급표1 삭제 <2012.1.1>
3. 일반직원(관리) 기준봉급표
  - 3-1. 일반직원(관리) 기준봉급표1 삭제 <2012.1.1>
4. 해외직원 기준봉급표
  - 4-1. 해외직원 기준봉급표1 삭제 <2016.1.14>
5. 초임호봉표
6. 직위·직급수당표 삭제 <2003.12.26>
7. 업무수당표 삭제 <2003.12.26>
8. 가족수당표 삭제 <2003.12.26>
9. 자격수당표
10. 초임하한급 및 상한급표
11. 기본급 차등액표
12. 직무급표
13. 평가급률표

[별표 1] <개정 2011.6.15., 2011.12.28., 2012.12.28., 2013.9.12., 2014.9.30., 2015.12.30., 2016.10.19., 2017.12.6., 2018.12.27., 2019.7.15.>

종합직원 기준봉급표

(단위 : 원)

호봉	2~3급 <sup>주1)</sup>	호봉	4급 <sup>주2)</sup>	호봉	5급 <sup>주2)</sup>	6급
20	4,196,000	15	3,067,000	1	1,580,000	
21	4,277,000	16	3,212,000	2	1,614,000	
22	4,361,000	17	3,625,000	3	1,655,000	
23	4,626,000	18	3,703,000	4	1,692,000	
24	4,711,000	19	3,810,000	5	1,732,000	
25	4,794,000	20	3,890,000	6	1,811,000	1,695,000
26	4,878,000	21	3,968,000	7	1,873,000	1,752,000
27	4,953,000	22	4,048,000	8	1,938,000	1,790,000
28	5,259,000	23	4,377,000	9	1,999,000	1,859,000
29	5,347,000	24	4,458,000	10	2,067,000	1,908,000
30	5,433,000	25	4,540,000	11	2,212,000	2,155,000
31	5,518,000	26	4,624,000	12	2,465,000	2,272,000
32	5,675,000	27	4,702,000	13	2,549,000	2,354,000
33	5,848,000	28	4,947,000	14	2,707,000	2,474,000
34	5,932,000	29	5,036,000	15	2,811,000	2,569,000
35	6,018,000	30	5,126,000	16	2,918,000	2,674,000
36	6,106,000	31	5,207,000	17	3,337,000	3,058,000
37	6,203,000	32	5,298,000	18	3,442,000	3,165,000
38	6,307,000	33	5,474,000	19	3,516,000	3,240,000
39	6,396,000	34	5,559,000	20	3,582,000	3,311,000
40	6,486,000	35	5,641,000	21	3,657,000	3,382,000
41	6,570,000	36	5,721,000	22	3,737,000	3,458,000
42	6,639,000	37	5,802,000	23	3,998,000	3,700,000
43	6,712,000	38	5,871,000	24	4,074,000	3,708,000
44	6,774,000	39	5,941,000	25	4,157,000	3,782,000
45	6,839,000	40	6,010,000	26	4,239,000	3,851,000
46	6,896,000	41	6,071,000	27	4,326,000	3,919,000
47	6,955,000	42	6,135,000	28	4,558,000	4,106,000
48	7,008,000	43	6,192,000	29	4,653,000	4,165,000
49	7,052,000	44	6,254,000	30	4,739,000	4,221,000
50	7,091,000	45	6,306,000	31	4,819,000	4,413,000
		46	6,362,000	32	4,903,000	4,486,000
		47	6,410,000	33	4,981,000	4,559,000
		48	6,456,000	34	5,056,000	4,628,000
		49	6,501,000	35	5,123,000	4,690,000
		50	6,538,000	36	5,184,000	4,744,000
				37	5,226,000	4,784,000
				38	5,257,000	4,812,000
				39	5,290,000	4,845,000

- 주 1) 2급인 팀장(S), 팀장(J) 및 기타에 대하여 각각 426천원, 287천원 및 203천원을 가산하고, 3급인 팀장(S) 및 팀장(J)에 대하여는 각각 371천원 및 104천원을 가산한다.  
 2) 팀장(J)에 대하여는 300천원을 가산한다.  
 3) 직위를 부여받지 아니한 직원의 경우로서 팀장(S) 또는 팀장(J)에 상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주1) 및 주2)를 적용한다.  
 4) 삭제 <2012.1.1>  
 5) 삭제 <2013.9.12>

[별표 1-1] 삭제 <2012.1.1>

[별표 2] <개정 2011.6.15., 2011.12.28., 2012.12.28., 2013.9.12., 2014.9.30., 2015.12.30., 2016.10.19., 2017.12.6., 2018.12.27., 2019.7.15.>

일반직원(행정) 기준봉급표

(단위 : 원)

호봉	3~5급 <sup>주1)</sup>	호봉	1~2급	3~5급 <sup>주1)</sup>
1	1,458,000	25	3,729,000	3,345,000
2	1,488,000	26	3,803,000	3,424,000
3	1,532,000	27	3,873,000	3,498,000
4	1,573,000	28	3,947,000	3,569,000
5	1,615,000	29	4,021,000	3,640,000
6	1,695,000	30	4,093,000	3,712,000
7	1,752,000	31	4,160,000	3,778,000
8	1,790,000	32	4,226,000	3,844,000
9	1,828,000	33	4,293,000	3,909,000
10	1,867,000	34	4,360,000	3,976,000
11	2,155,000	35	4,426,000	4,045,000
12	2,220,000	36	4,490,000	4,107,000
13	2,290,000	37	4,547,000	4,165,000
14	2,416,000	38	4,605,000	4,224,000
15	2,516,000	39	4,659,000	4,275,000
16	2,684,000	40	4,715,000	4,318,000
17	2,756,000	41	4,758,000	4,355,000
18	2,825,000	42	4,804,000	4,391,000
19	2,895,000	43	4,846,000	4,427,000
20	2,969,000	44	4,879,000	4,463,000
21	3,039,000	45	4,914,000	4,499,000
22	3,127,000	46	4,949,000	4,554,000
23	3,201,000	47	4,981,000	4,606,000
24	3,274,000	48	5,026,000	4,655,000
		49	5,072,000	4,701,000
		50	5,117,000	4,743,000

주 1) 3급 및 4급에 대하여는 각각 195천원 및 91천원을 가산한다.

2) 삭제 <2012.1.1>

3) 삭제 <2013.9.12>

[별표 2-1] 삭제 <2012.1.1>

[별표 3] <개정 2011.6.15., 2011.12.28., 2012.12.28., 2013.9.12., 2014.9.30., 2015.12.30., 2016.10.19., 2017.12.6., 2018.12.27., 2019.7.15.>

일반직원(관리) 기준봉급표

(단위 : 원)

호봉	금액	호봉	금액
1	1,535,000	26	2,838,000
2	1,565,000	27	2,909,000
3	1,608,000	28	2,951,000
4	1,647,000	29	2,995,000
5	1,692,000	30	3,036,000
6	1,770,000	31	3,085,000
7	1,825,000	32	3,123,000
8	1,924,000	33	3,165,000
9	1,954,000	34	3,212,000
10	1,987,000	35	3,252,000
11	2,026,000	36	3,290,000
12	2,117,000	37	3,333,000
13	2,145,000	38	3,373,000
14	2,208,000	39	3,413,000
15	2,266,000	40	3,449,000
16	2,351,000	41	3,487,000
17	2,382,000	42	3,526,000
18	2,562,000	43	3,567,000
19	2,594,000	44	3,603,000
20	2,628,000	45	3,639,000
21	2,662,000	46	3,663,000
22	2,696,000	47	3,698,000
23	2,728,000	48	3,729,000
24	2,765,000	49	3,748,000
25	2,801,000	50	3,770,000

주 1) 1~2급, 3급 및 4급에 대하여 각각 143천원, 131천원 및 60천원을 가산한다.

2) 삭제 <2012.1.1>

3) 삭제 <2013.9.12>

[별표 3-1] 삭제 <2012.1.1>

[별표 4] <개정 2011.6.15., 2012.10.19., 2012.12.28., 2013.9.12., 2014.9.30., 2015.12.30., 2016.1.14., 2016.10.19., 2017.12.6., 2018.12.27.>

### 해외직원 기준봉급표

가. 국내보수 : 별표 1 기준봉급(연봉제 적용 대상자의 경우는 연봉의 18분의 1)의 100분의 30

나. 해외보수

(단위 : 주재국 통화)

구 분		1급	2급	3급	4급	5급
미국		6,917	6,592	5,817	5,237	4,206
독일, 프랑스		6,365	6,120	5,343	4,788	3,840
일본		1,152,768	1,090,530	955,567	854,922	682,611
영국		4,663	4,481	3,944	3,574	2,849
중국 <sup>주1)</sup>	홍콩	52,146	49,553	43,622	39,115	31,235
	북경	57,765	54,522	47,772	42,466	33,756
베트남 <sup>주2)</sup>		6,189	5,898	5,204	4,686	3,764

주 1) 홍콩은 홍콩달러, 북경은 위안화 기준

주 2) 베트남은 미 달러화 기준

[별표 4-1] 삭제 <2016.1.14>

### 해외직원 기준봉급표1

[별표 5] <개정 2011.12.28, 2019.7.15.>

### 초 입 호 봉 표

직 위	종합직원 (6급)	일반직원(행정)	일반직원(관리) (운전기사)
초임호봉	11 (7)	6	6 (11)

[별표 6] 삭제 <2003.12.26>

직위·직급수당표

[별표 7] 삭제 <2003.12.26>

업무수당표

[별표 8] 삭제 <2003.12.26>

가족수당표

[별표 9] <개정 2011.8.11., 2012.12.28., 2013.3.22., 2013.5.14., 2013.9.12., 2014.9.30., 2015.12.30., 2016.4.22., 2017.12.6., 2018.5.18.>

### 자 격 수 당 표

(단위 : 원)

자격증	관련 부서(부서내 실 포함) 또는 업무	금 액
변호사 <sup>1)</sup>	각 부서	500,000
공인회계사 <sup>1)</sup>	각 부서	300,000 <sup>2)</sup>
보험계리사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분쟁조정1국, 분쟁조정2국, 불법금융대응단, 보험사기대응단, 각 지원, 제재심의국, 보험감독국, 보험감리국, 생명보험 검사국, 손해보험검사국, 보험영업검사실, 보험 리스크제도실, 연금금융실, 감사실, 감찰실	200,000
손해사정사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분쟁조정1국, 분쟁조정2국, 불법금융대응단, 보험사기대응단, 각 지원, 제재심의국, 보험감독국, 보험감리국, 생명보험 검사국, 손해보험검사국, 보험영업검사실, 보험 리스크제도실, 연금금융실, 감사실, 감찰실	100,000
정보처리기사 (1급) <sup>1)</sup>	각 부서	100,000
기술사	자격증 관련 기술업무	150,000
기사 (1급) <sup>3)</sup>	자격증 관련 기술업무	100,000

- 주 1) 연수규정에서 정한 국내 또는 해외학술연수 사유로 인재교육원 소속인 직원은 제외한다.  
 2) 1998. 12. 31 이전 입사자는 450,000원  
 3) 전기기사 1급, 건축기사 1급, 건축설비 1급 또는 건설기계 1급 해당자  
 4) 「인사관리규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수습기간 중에 있는 인적자원개발실소속 직원은 제외한다.



[별표 10] <개정 2011.6.15., 2012.12.28., 2013.9.12., 2014.9.30., 2015.12.30., 2016.10.19., 2017.12.6., 2018.12.27.>

### 초임하한급 및 상한급표

(단위 : 원)

구 분	1 급	2 급	3 급
초임하한급	58,379,000	53,132,000	46,572,000
상한급	67,560,000	64,281,000	57,723,000

- 주 1) 외부전문가 채용시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상한급을 초과할 수 있음  
 2) 3~5급인 전문직원은 초임하한급 제한 없음. 다만, 3급 팀장이상은 직위보임기간(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연봉제적용기간을 준용)에 한하여 초임하한급을 적용.

[별표 11] <개정 2011.6.15., 2012.12.28., 2013.9.12., 2014.9.30., 2015.12.30., 2016.10.19., 2017.12.6., 2018.12.27., 2019.7.15.>

### 기본급 차등액표

(단위 : 천원)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종합직원 <sup>1)</sup>	2.5%	2.0%	1.6%	1.0%	0%
전문직원	1,303	1,042	836	524	0

- 주 1) 차등액은 전년도 기본급에 곱하여 산정한다.

[별표 12] <개정 2011.6.15., 2012.12.28., 2013.5.14., 2013.9.12., 2014.9.30., 2015.12.30., 2016.10.19., 2016.11.11., 2017.12.6., 2018.12.27.>

### 직 무 급 표

(단위 : 원)

선임국장	부서장	실장	팀장(S)	팀장(J)	기타
64,105,000	36,709,000	31,501,000	26,263,000	20,860,000	15,221,000

- 주 1) 부서장은 실장급 이상 직무 수행 경력이 3년차 이상인 국장, 지원장(광역시), 해외 사무소장(뉴욕, 런던, 동경, 북경), 실장을 말한다.  
 2) 실장은 실장급 이상 직무 수행 경력이 3년차 미만인 국장, 지원장(광역시), 실장, 해외사무소장(뉴욕, 런던, 동경, 북경) 및 지원장(광역시 제외), 해외사무소장(뉴욕, 런던, 동경, 북경 제외)을 말한다.  
 3) <삭 제>  
 4) 연공제 직원에 대하여도 주1) 내지 주2)을 적용한다.  
 5) 경력 및 전문직원으로 채용된 국장, 지원장은 부서장에 해당한다.

[별표 13] <개정 2013.5.14.>

평 가 급 료 표

(단위 : %)

적용시기	직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05년도	부서장	10.0	5.0	0	- 5.0	- 10.0
	실 장	10.0	5.0	0	- 5.0	- 10.0
	팀장(S)	8.0	4.0	0	- 4.0	- 8.0
	팀장(J)	6.0	3.0	0	- 3.0	- 6.0
	기 타	4.0	2.0	0	- 2.0	- 4.0
06년도 이후	선임국장	15.0	7.5	0	- 7.5	- 15.0
	부서장	15.0	7.5	0	- 7.5	- 15.0
	실 장	15.0	7.5	0	- 7.5	- 15.0
	팀장(S)	12.0	6.0	0	- 6.0	- 12.0
	팀장(J)	9.0	4.5	0	- 4.5	- 9.0
	기 타	6.0	3.0	0	- 3.0	- 6.0